

의안번호	2201142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7. 18.
추계번호	24C1308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1조제6항 (고지명령의 집행)	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제50조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·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1조제6항 (고지명령의 집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성범죄자 고지정보 송부대상 확대(안 제51조제6항)

-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아동·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에게 우편·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

1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·입양신고·전입신고가 된 아동·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관할구역에 설립·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·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한다.

-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[표 1]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등 운영 현황

구분	내용	예산(2024년)
신상정보 고지제도	인근 성범죄자의 정보를 아동·청소년 거주세대 및 관련 기관에 고지(우편, 모바일)	3,934백만원
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	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	264백만원

자료: 여성가족부

- 개정안에 따라 성범죄자 고지정보 송부 대상에 “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사람”이 추가되면 고지정보 송부 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, 향후 성범죄자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할 사람의 수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2024년 예산편성 기준 성범죄자 고지정보 우편물 발송 단가는 건당 850원, 모바일 고지 단가는 건당 110원으로 책정되어 있음

-
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·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
 2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
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 4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,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
 5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
 - 가. 아동양육시설
 - 나. 아동일시보호시설
 - 다. 아동보호치료시설
 - 라. 공동생활가정
 - 마. 지역아동센터
 6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
 7.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